

## 학생행복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5.02.27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만족스럽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맡는다.

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1인 : 학생취업지원처장
2. 교원 3인 :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추천한 교원 3인
3. 직원 2인 :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추천한 직원 2인
3. 학생 5인 : 총학생회(또는 중앙운영위원회)가 추천한 본교 재학생 5인
4. 간사 1인 : 학생지원팀장
5. 서기 1인 : 학생지원팀 학생담당 팀원

④ 위원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4조(회의의 소집 및 개최)** ①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회의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최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만족스럽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각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안하고, 해당부처는 학생행복위원회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.

1.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관한 사항
2.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
3. 장학금에 관한 사항
4. 그 외 학생 행복 향상에 관련된 사항

**제6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.

**제7조(운영세칙)**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### 부칙

이 지침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